



NEWSLETTER

베트남 시행령 219/2025/NĐ-CP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요 신규 내용



노동허가증 발급 권한

과거 시행령 152/2020/NĐ-CP 제3조 제1항(70/2023/NĐ-CP 시행령으로 개정됨)의 규정에 따라 발급 권한이 다음과 같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노동보훈사회청이 해당 지역 내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며, 노동보훈사회부는 특수한 경우(예: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첨단기술단지 등)에 노동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19/2025/NĐ-CP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허가증 및 노동허가증 발급 대상 제외 확인서의 발급·재발급·연장·회수 권한은 **성·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이관됩니다.

"성·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지역에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용자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허가증 및 노동허가증 발급 대상 제외 확인서를 발급·재발급·연장·회수할 권한을 갖는다."



범죄경력조서 온라인 발급

구규정

노동허가증 발급과범죄경력조서 발급을 동시에 연계 처리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두 기관(노동보훈사회청 및 공안기관)에서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규정

시행령 219/2025/ND-CP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와 사법기록증명서 발급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연계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연계 절차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노동허가증 발급기관(성 인민위원회 소속) 및 사법기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안기관 간에 운영됩니다.

노동허가증 연장



219/2025/NĐ-CP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노동허가증은 최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152/2020/NĐ-CP 제19조 제1항은 노동허가증 연장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동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70/2023/NĐ-CP 시행령으로 개정된 152/2020/NĐ-CP 시행령은 14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19/2025/NĐ-CP 시행령 제7조는 노동허가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15가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금 30억 동(VND) 이상을 출자한 기업 소유주
- 국제조약에 따른 자원봉사자
- 1년 중 90일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
-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 강사, 학생, 실습생
- 외교공관 구성원의 가족

219 시행령은 여기에 더하여, 금융,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분야 및 사회경제 발전 우선 분야에서 근무하며 각 부·부급기관 또는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GIẤY XÁC NHẬN KHÔNG THUỘC D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Số: 2 [redacted] H	
1. Họ và tên:	[redacted]
2. Giới tính: Nam	[redacted]
3. Ngày, tháng, năm sinh:	[redacted]
4. Quốc tịch: Hàn Quốc	Số hộ chiếu: [redacted]
5. Làm việc tại: Công ty TNHH	[redacted]
6. Địa điểm làm việc:	[redacted]

전문가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신규 규정

219/2025/NĐ-CP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전문가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 대학교 졸업 학위를 보유하고,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전환 분야 또는 사회경제 발전 우선 분야와 같은 특수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이전 규정

이전 시행령 52/2020/NĐ-CP 제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전문가의 경우 예외 없이 관련 분야 실무 경력 최소 3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의 근무



현시행령 219/2025/NĐ-CP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이 허용됩니다.

- 노동허가증을 이미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여러 성·중앙직할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성·도시로 근무지를 이동하기 전에 매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지역의 관할 기관에 최소 3영업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령 152/2020/NĐ-CP 에는 이미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근로자가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실무상 일부 지방에서는 근로자가 새로운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노동허가증 재발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Thank You!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Website :

<https://hankuklawfirm.com/en/>

Email :

info@hankuklawfirm.com

Phone :

0942-339-063

